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7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1 ~ 8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 ~ 8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1 ~ 89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1 ~ 90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11 ~ 91	거창군립 합창단·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6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77
----------	-----------

제출연월일	2011. 11.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출산장려지원, 전입세대지원의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임산부의 불안감 해소, 태아·영유아 건강증진, 전입세대의 편의도모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군의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의 지원규모·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제6조)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5개월분 지원 ⇒ 임신시까지 지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00만원 이내
⇒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50만원 이내
-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격 완화
: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 결혼이민자의 경우를 추가함

나. 지원방법을 개선함(안 제7조, 제20조)

- 임산부의 영양제 : 매월 1개월씩 7개월간 지급
⇒ 최대 7개월분을 지급
- 엽산제 :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 일괄지급
⇒ 임산부는 개월수 산정하여 지급
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하고 임신 될 때까지 추가지급 가능
-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50리터 20매 이내
⇒ 20리터 45매 이내(다만, 지원금액 내에서 종량제봉투규격 변경지원 가능)

다. 유명무실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조항 삭제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12년 본예산 확보(보건소 1,2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녹색환경과, 보건소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1 10. 07. ~ 2011. 10.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출생아”를 “태아·출생아”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산부 철분제”를 “임산부 영양제”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5개월분”을 “임신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50만원 이내

제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결혼이민자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제7조제2호·제3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산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한다.

3. 엽산제의 경우 임산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한다.

제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본문·제1호 중 “출생아”를 “태아·출생아”로 한다.

제2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입세대에 대한 20리터 45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다만, 전입세대가 원하면 지원금액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변경 가능)
(녹색환경과)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출생아 건강보험 지원</u>”이란 셋째아 이 이상 <u>출생아</u>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3. ~ 11. (생 략)</p>	<p>제3조(정의) ----- -----</p> <p>1.(현행과 같음)</p> <p>2. <u>태아·출생아</u> ----- ----- <u>태아·출생아</u> ----- -----</p> <p>3. ~ 11.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임산부 철분제</u> : 7개월분(임신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p> <p>3. <u>엽산제</u> : <u>5개월분</u></p> <p>5. ~ 6. (생 략)</p> <p>7. <u>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u> : <u>200만원 이내</u></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u>군수</u>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임산부 영양제</u> ----- -----</p> <p>3. ----- : <u>임신시까지</u></p> <p>5. ~ 6. (현행과 같음)</p> <p>7. <u>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u> : <u>250만원 이내</u></p>
<p>제6조(지원대상 자격)</p> <p>① ~ ② (생 략)</p> <p>③ 제5조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u>(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u></p>	<p>제6조(지원대상 자격)</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결혼 이민자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u></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p> <p>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을 협조, 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거창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p> <p>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p> <p>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④ 협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p> <p>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87
----------	-----------

제출연월일	2011. 12.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속기관 등의 소재지를 기존의 지번방식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녹지과장 분장사무 중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3조)

※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 만료(2011.12.31.)

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안 별표)

- 농업기술센터 : 거창읍 거함대로 3322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표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 거창읍 심소정길 39-68
- 교육문화센터 : 거창읍 수남로 2181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 신원면 신차로 2924
- 시설관리사업소 : 거창읍 심소정길 39-3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11.18. ~ 12.08.) 결과 : 1건 접수(반영 1건)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기간 : 2011. 11. 18 ~ 2011. 12. 08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민원봉사과장	○교육문화센터 - 거창읍 수남로 2181 ○중촌보건진료소 - 가북면 가북로 1354	○교육문화센터 대표지번 정정 및 신축으로 인한 중촌 보건진료소 지번 정정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마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평리 1359-19번지”를 “거함대로 3322”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양평리 1153번지”를 “심소정길 39-68”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김천리 216-5번지”를 “수남로 2181”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현리 551번지”를 “신차로 2924”로 한다.

제20조 중 “양평리 1160번지”를 “심소정길 39-36”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산림녹지과장 가. ~ 라. (생략) 마.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산림녹지과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설치) ① (생략) ② 센터의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59-19번지에 둔다.	제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거합대로 3322</u> -----.
제11조(설치) ① (생략) ②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53번지에 둔다.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심소정길 39-68</u> -----
제14조(설치) ① (생략) ② 교육문화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에 둔다.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수남로 2181</u> -----
제17조(설치) ① (생략) ②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u>대현리 551번지</u> 에 둔다.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신차로 2924</u> -----
제20조(설치) ① (생략) ② 시설관리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에 둔다.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심소정길 39-36</u> -----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u>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u>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u>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u>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u>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8-1</u>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u>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u>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u>거창군 고제면 덕유월성로 2313</u>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u>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0</u>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u>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u>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u>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4</u>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u>거창군 남하면 무릉1길 7-7</u>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u>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u>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u>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u>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u>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5</u>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u>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u>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u>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19</u>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u>거창군 웅양면 하곡1길 3</u>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u>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u>	탑전,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명 보건진료소	<u>거창군 고제면 하수내길 5</u>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u>거창군 북상면 소정새들길 9-5</u>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u>거창군 북상면 은지밭길 79-6</u>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u>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799-4</u>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u>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u>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u>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41</u>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u>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34-8</u>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u>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31-3</u>	춘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u>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27-12</u>	자하, 신기, 장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u>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76</u>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u>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4</u>	월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u>거창군 가조면 도리3길 19</u>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u>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17</u>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u>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54</u>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88
----------	-----------

제출연월일	2011. 12.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신규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공무원 정원 : 증 5명

- 현행 : 645명(본청270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4명, 사업소54명, 읍37명, 면146명)

- 조정 : 650명(본청269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 사업소54명, 읍39명, 면149명)

○ 일반직 6급 이하 : 증 24명(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15명, 기능직 일반직 조정 4명, 사회복지인력 증원 5명)

- 현행 : 529명(본청234명, 의회8명, 직속기관75명, 사업소38명, 읍33명, 면141명)

- 조정 : 553명(본청234명, 의회8명, 직속기관91명, 사업소38명, 읍35명, 면147명)

○ 별정직 : 감 15명

- 현행 : 16명(본청1명, 직속기관15명)

- 조정 : 1명(본청1명, 직속기관0명)

○ 기능직 : 감 4명

- 현행 : 68명(본청32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5명)

- 조정 : 64명(본청31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2명)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6급 9% 이내, 7급 21% 이내, 8급 21% 이내, 9급 49% 이상
- 조정 : 6급 10% 이내, 7급 23% 이내, 8급 23% 이내, 9급 44%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189,0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11.18 ~ 2011.12.0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45명”을 “650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631명”을 “636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4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1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50명</u>-----</p> <p>-----</p> <p>1. ----- <u>636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7% 이내	28.2% 이내	31% 이내	25.3%이내	7.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u>10% 이내</u>	<u>23% 이내</u>	<u>23% 이내</u>	<u>44%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50 (645)	269 (270)	14	125 (124)	61 (60)	64	54	39 (37)	149 (146)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553 (529)	234	8	91 (75)	28 (27)	63 (48)	38	35 (33)	147 (141)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14 (490)	220	5	85 (69)	24 (23)	61 (46)	34	34 (32)	136 (13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6)	1		0 (15)		0 (15)			
연구직 (연구사)		6	2		3	3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기능직		64 (68)	31 (32)	6	6	5	1	15	4	2 (5)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89
----------	-----------

제출연월일	2011. 12.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지번방식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별표)

- 거 창 군 청 : 상림리 64-1 ⇒ 중앙로 103
- 거창읍사무소 : 상림리 60-3 ⇒ 거열로 90
- 주상면사무소 : 도평리 713 ⇒ 주곡로 655
- 웅양면사무소 : 노현리 223-2 ⇒ 웅양로 1431
- 고제면사무소 : 농산리 754-3 ⇒ 입석1길 14
- 북상면사무소 : 갈계리 1391-3 ⇒ 송계로 710
- 위천면사무소 : 장기리 511-2 ⇒ 원학길 324
- 마리면사무소 : 말흘리 247-4 ⇒ 빼재로 18
- 남상면사무소 : 무촌리 632-2 ⇒ 인평길 36
- 남하면사무소 : 무릉리 991-1 ⇒ 영서로 41
- 신원면사무소 : 과정리 187-7 ⇒ 신차로 3067
- 가조면사무소 : 마상리 345-3 ⇒ 장군봉1길 8
- 가북면사무소 : 우혜리 1888 ⇒ 용암로 17-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11.18. ~ 12.0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거 창 군 청	<u>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u>	
거창읍 사무소	<u>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u>	
주상면 사무소	<u>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u>	
응양면 사무소	<u>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u>	
고제면 사무소	<u>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u>	
북상면 사무소	<u>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u>	
위천면 사무소	<u>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u>	
마리면 사무소	<u>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u>	
남상면 사무소	<u>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u>	
남하면 사무소	<u>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u>	
신원면 사무소	<u>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u>	
가조면 사무소	<u>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u>	
가북면 사무소	<u>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u>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90
----------	-----------

제출일자	2011. 12. 07.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현행 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3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추가 감면(안 제4조)

다.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을 삭제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현행 제4조)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같은 법 제17조의2(현행 제5조)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같은 법제58조의2(현행 제9조)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85조의2(현행 제10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60조제4항(현행 제11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56조제3항(현행 제12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58조제4항(현행 제15조)

마.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 : 2014. 12. 31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012. 12. 31(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1. 03. ~ 11. 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

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

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균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거창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거창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거창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거창군세 감면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미색모조 80g/㎡)

작성방법

1.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거 창 군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감면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거 창 군 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거창군립 합창단 ·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91
----------	-----------

제출연월일	2011. 12. 0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군내 여성합창단과 남성중창단이 통합을 결정하면서 군립화를 희망하고, 청소년예술단 또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함께 군립화를 추진하여 조직적인 운영과 생활속의 예술단체로 육성·발전시켜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립 합창단·청소년예술단의 구성단체와 구성원을 규정함(안 제2조)

- 합창단과 청소년예술단으로 이루어짐
-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지휘자, 트레이너, 단원 등으로 구성됨

나. 단장 등의 자격과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
-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전공단원
: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
- 일반단원 : 군에 거주하고,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

다. 위촉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촉 함

라.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지휘자 등의 전형, 단장·부단장·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마. 경비 등의 지원, 입장료 징수, 외부출연과 수입금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함
-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생긴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80조의2·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기존 예산범위로 운영하고, 군 예산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
- 총 31백만원 : 여성합창단 15백만, 남성중창단 1백만,
청소년예술단 15백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10.24.~11.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립 합창단·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발전을 위하여 거창군립 합창단·청소년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립 합창단·청소년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및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관현악단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예술단을 둔다.

② 예술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이하 “단장 등”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다.

1. 합창단 : 예술감독·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 각 1명과 전공단원·일반단원 포함하여 60명 이내
2. 청소년예술단 : 예술감독 1명
 - 가. 어린이합창단 : 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 각 1명과 일반단원 포함하여 70명 이내
 - 나. 청소년관현악단 : 지휘자 1명, 트레이너 3명과 일반단원 포함하여 70명 이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은 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와 물품을 관리한다.

④ 예술감독은 합창단 또는 청소년예술단의 업무전반을 총괄 담당한다.

⑤ 지휘자는 연주를 지휘하며 음악지도를 담당한다

⑥ 트레이너는 합창단 또는 청소년예술단의 단원을 훈련시키고 지도한다.

⑦ 반주자는 합창단 및 청소년예술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⑧ 단원은 합창단 및 청소년예술단의 연주를 담당하며 전공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자격과 위촉) ① 단장 및 부단장은 예술단을 통솔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예술감독은 음악분야를 전공하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전공단원은 각 음악분야를 전공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결과 선정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군에 거주하며 성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결과 선정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일반단원 중 공개 전형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공단원에 준한다.

⑤ 청소년예술단의 단원은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입단을 희망하는 대상자 중 예술적인 소양과 실력, 가능성을 평가하여 준 단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준 단원 중 일정한 교육 후 전형결과 선정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외 거주자 중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사람은 단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① 단장·부단장·예술감독 및 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 만료 후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합창단·청소년예술단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지휘자, 예산담당부서장, 문화예술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 음악관계 인사 4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연간공연계획, 사업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지휘자 등의 전형에 관한 사항
3. 임기 만료된 단장 등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
4. 단장·부단장·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전형 방법) ① 지휘자 등의 전형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전형은 예술단의 최초 설립이나 결원발생,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휘자 등은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단장 등의 해촉) 군수는 단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제9조(경비 등의 지원) ① 예술감독 및 지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단장, 부단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운영계획) 단장은 예술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 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 ②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외부출연과 수입금) ① 예술단은 다른 기관이나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으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제13조(행사참여 및 시설사용) 예술단은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공연 요청 시 우선 참여하며, 연습에 필요한 공유재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 여성합창단, 거창남성중창단 아텔포스, 거창청소년예술단의 조직구성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